

수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4나524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4나524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5279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 항소인B구역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류한상

변론 종결2024. 4. 25.

판결 선고2024. 6. 2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5279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은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김경진

판사김용태